#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80

발의연월일: 2024. 10. 18.

발 의 자:정성호·안규백·이수진

김정호 • 윤후덕 • 김영진

이연희 • 이기헌 • 최기상

박희승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은 선단 공정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 중하고, 중소기업은 범용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범용 반 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반도 체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범용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

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사업의 일몰기한과 세액공제액 이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44조).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중소기업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중고품 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에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반도체 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3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제144조제1항 중 "10년"을 "10년(다만,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목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4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u>제외한다</u> . 이하 이	제외하되, 중소기업의 반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도체 기술과 관련한 중고품 투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u>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가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u><신 설></u>

_	
_	
-	
_	
_	
1) 2)	 (현행과 같음) 
	000413 10.91 01
	<u>2034년 12월 31</u> 일
	<u> </u>
3)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
	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반도체 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에 2034년 12월 31일
	<u>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u>
	분의 25에 상당하는 금
	액

나. (생 략) 3. (생략) ② ~ ⑤ (생 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 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 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 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 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 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 칙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 12조의4(종전 제37조의 개정규 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 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

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나. (현행과 같음)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경우에는「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게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③ (생 략)

1 <u>0년</u>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목 3)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20년)
<u>.</u>
②·③ (현행과 같음)